

<p>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제 4 조(위원의 임기) 제3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이며 회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6 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.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7 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·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8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뚝섬체육공원 <p>제3조제1항 중 “체육센터”를 “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”로 하고, 동조제2항 중 “1년”을 각각 “3년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	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
	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
	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
	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	안 제3조의 제목 “(재정지원대상)”을 “(재정용자대상)”으로 하고, 동조중 “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”를 “재정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”로 한다.
	안 제9조를 제10조로, 안 제8조를 제9조로, 안 제7조를 제8조로, 안 제6조를 제7조로, 안 제5조를 제6조로,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	제4조(재정보조대상)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.
	1.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. 재정용자대상 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